
학생자치활동 규정



장훈고등학교

학생자치활동 규정

(2025.03.01. 전부 개정)

창의인재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장훈고등학교 학생자치활동 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자치 능력을 배양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며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여 나아가 더불어 사는 시민 사회생활을 체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자치활동) 및 시행령 제9조 제8호(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에 의거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4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및 지원)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회 및 기타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 자치활동의 자율과 자치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2장 학생자치회

제5조(명칭) 본회는 ‘장훈고등학교 학생자치회’라고 한다.

제6조(소재) 본회는 장훈고등학교 내에 둔다.

제7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휴학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제8조(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학생자치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9조 (학생자치기구) 본회는 학생의 원활한 자치활동을 위해 다음의 기구를 둔다.

- ① 운영위원회
- ② 대의원회
- ③ 학급회
- ④ 지도위원회
- ⑤ 선거관리 위원회

각 자치기구의 구성과 운영은 본 규정의 제3장(운영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제4장(대의원회), 제5장(학급회), 제6장(지도위원회)에 따른다.

제10조 (활동) 1. 본회는 제1장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① 학예·체육·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②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 ③ 학교의 전통, 민족 문화의 전통 계승, 발전을 위한 활동
- ④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활동
- ⑤ 학교의 건전한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
- ⑥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자치활동

2. 본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본회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제한 금지) ① 학교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② 징계 기록에 관한 내용은 각호에 해당하는 징계기록(적용 기간, 징계 수준, 징계 사유)을 학교 내의 공식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 결정하여 선거권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학생회 정·부회장 및 학급 정·부회장 선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가. 적용기간 : 기준일(입후보 등록일) 이전의 1년 이내의 징계기록 및 불법선거운동 전력

나. 징계수준 : 적용 기간 중에 처분 받은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제12조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참여권) ① 학생은 학생 공동의 관심 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 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13조 (정책결정 참여) ① 학생회는 학교 운영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② 학교장과 교직원 등 학생회 정·부회장 및 학급회 정·부회장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생회 정·부회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절 정·부회장 및 임원

제14조(용어) ① 운영위원회란 선거에 의해 선출된 학생회 정·부회장, 각부 부·차장 및 부원으로 공식적인 학생 조직을 말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구성된 조직으로서 학교교육활동과 교내 의사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시민의 역량과 리더십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임무) ① 회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은 학생회 업무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3. 운영위원회의 각 부장과 차장을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4. 학생 주도의 학교 행사,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한다.
5. 자치활동 예산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을 갖는다.

6. 학생 인권과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총괄하며 부를 대표한다.
- ④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임기) 정·부회장 및 각부 부·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7조 (자격상실) 정·부회장 및 각부 부·차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대의원회의 불신임 의결에 따른 학교장 승인
2. 생활교육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경우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 학생 조치(3~9호)가 확정되었을 경우
4. 생활평점제 규정에 따라 벌점 20점 이상을 받았을 때

제2절 정·부회장 선거 관리 규정

제18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화롭게 학생회 정·부회장을 선출함으로써 선거가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학생의 자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 (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도위원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게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지도위원회에 선거 업무에 관한 지도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거 관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선거일 공고
2. 선거인 명부작성
3. 입후보자 서류 접수와 심사
4. 입후보자 기호 결정과 공고
5. 선거운동 관리
6. 합동연설회 개최

7. 투표 및 개표 사무 집행
8. 당선인 공고
9. 선거 소송의 심사, 처분

이외 선거의 공고부터 당선까지의 공표까지 제반 사항을 주관하며 선거운동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며 불공정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제21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 대의원(학급 정·부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입후보자이거나 그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가 지정한 학급의 임원이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한다.

제22조(선거관리위원회 조직)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은 학생회 운영위원회 회장이,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부회장이 겸임한다. 단, 부회장이 입후보자이거나 그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부장 혹은 차장 중 회장이 지도위원회에 추천하여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조직일로부터 선거 결과 발표일까지로 한다.

③ 선거 결과 발표일 후 선거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이의 신청의 심의, 결정이 종료될 때까지로 임기를 연장한다.

제23조(선거일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10일 전까지 선거 일시를 공고한다.

제24조(선거권자) 선거권은 선거 공고일을 기준으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만 있다.

제25조(입후보 자격) 회장 입후보자는 본교 2학년 재학 중인 자이어야 하며, 부회장 입후보자는 본교 1학년 재학 중인 자이어야 한다.

제26조(입후보 등록) ① 입후보자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4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회장 입후보 등록 신청서(별도 양식)
2. 정/부회장 입후보 추천자(학생) 연명부(별도양식)

3.정/부회장 입후보 추천자(교사) 연명부(별도양식)

4.선거운동원(10명 이내) 등록신청서(별도양식)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입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입후보자 명단을 공고한다.

제27조(기호 배정) 등록된 후보 중 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도위원회의 적격심사를 거친 입후보자가 직접 추첨하여 기호를 배정받는다.

제28조(등록무효 및 사퇴)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 후 피선거권의 결격사유가 발견 혹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 무효로 처리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제2항의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명단이 공고된 날로부터 선거일 등교 시간까지 할 수 있다. 단, 합동유세는 제외한다.

②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각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등교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단, 선거운동이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③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온라인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도위원회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30조(불법선거운동)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하여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선거권자에게 금품(현금, 음식물, 선물, 기프티콘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2.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3. 입후보 등록 시에 신고한 선거운동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4. 본 조항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② 불법선거운동 사실이 투표가 종료된 후 밝혀졌고, 불법선거운동을 행한 자가 당선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당사자의 당선무효와 재선거를 공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고, 후보 등록 무효, 당선무효를 결정할 때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불법선거운동 여부의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지도위원회에 회부한다.
- ⑤ 4항에서 회부된 안건은 지도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불법선거운동’ 판결을 받은 학생은 향후 1년 동안 학생회 및 학급 임원 출마 시 해당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제31조 (선거 게시물) ① 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와 공약사항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출력물 형태(B4크기) 또는 파일 형태 등으로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입후보자는 게시물을 제작하기 전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제출한 게시물을 검토하고 수정 지시를 할 수 있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제출한 게시물을 학생이 많이 다니는 곳에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게시물을 부착한다.

제32조 (합동연설회) 합동연설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합동연설회는 동일 날짜, 동일 장소에서 실시한다.
- ② 연설회순서는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진행한다.
- ③ 연설회는 5분 이내로 한다.
- ④ 연설회 원고는 합동연설회 3일 전까지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⑤ 자연재해나 감염병 유행 등으로 합동연설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선거 연설회를 시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 합동연설회 방법은 선거위원회와 지도위원회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제33조 (투표 방법) ① 투표는 지정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실시한다.

- ②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한 투표지에 무기명, 비밀, 직접 투표로 한다.
- ③ 투표가 완료된 투표함은 즉시 선거 관리 본부로 이송한다.
- ④ 필요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34조 (개표)** ①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공정하게 진행한다.
- ② 개표 장소에는 반드시 지도 교사와 선거관리위원장이 입회하여야 한다.
- ③ 개표 장소에는 후보자별 참관인(3명 이내)이 참석하여 개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 ④ 전자투표의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35조 (무효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한다.

- ① 규정 투표용지가 아닌 것
- ② 어느 난에도 표시되지 않은 것
- ③ 둘 이상의 난에 표기한 것
- ④ 어느 난에 표시했는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⑤ 정해진 기표 방법 이외의 방법이나 문자로 표한 것

- 제36조 (당선자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 결과 최다 유효표를 얻은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 ② 제1항의 개표 결과 최다득표자의 득표수가 같을 때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최다 득표자들만을 후보로 재투표를 시행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당선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 (단일 입후보) 단일 입후보 시 총유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50%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제38조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제39조 (겸임) 당선자가 학급 정·부회장일 경우 운영위원회 정·부회장과 겸임할 수 있다.

제40조 (재선거) ①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시행한다.

1.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 취소에 합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를 무효로 결정할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학적상의 변동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했을 때
3.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본 선거 규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로 될 때
4. 최다득표자가 둘 이상일 때(단, 이 경우 최다득표자만 재선거 입후보 자격을 갖는다.)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41조 (보궐선거) ① 운영위원회 정·부회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제16조에 의거 회장단이 징계를 받아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보궐선거를 시행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보궐선거 요건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시행해야 하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선정한다.

④ [회장 보궐선거]운영위원회 회장의 임기 종료일까지 선거 일정이 확보되지 않거나 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회장 보궐선거를 시행하지 않고 부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⑤ [부회장 보궐선거]운영위원회 부회장의 임기 종료일까지 선거 일정이 확보되지 않거나 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에는, 대의원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승인을 받아 부회장 보궐선거를 시행하지 않는다.

⑥ [정·부회장 보궐선거]운영위원회 정·부회장의 임기 종료일까지 선거 일정이 확보되지 않거나 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기획지원부 부장의 대행 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 (선거에 의한 이의신청) ①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 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 내용을 심의,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 (당선무효 및 임명취소) ①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당선인이 제30조 1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정·부회장의 임기 중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요구한 가해 학생 조치(3~9호)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정·부회장의 임명이 취소된다.

제44조(기타) ① 선거 결과에 관한 서류는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② 본 규정이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례에 의하되, 그 유권해석은 지도위원회에 일임한다.

제4절 정·부회장 선거 관리 규정

제45조(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가부 부장과 차장 및 부원으로 구성한다.

제46조 (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1. 학생의 복지 증진에 관한 활동
2. 학교 행사의 기획·운영에 관한 활동
3.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의견수렴 및 제시 활동
4. 학생 자치활동 예산의 운영에 관한 활동
5. 대의원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심의 결정된 사항의 추진
6.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을 위한 학생 의견수렴 및 제안
7. 학생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참석 및 의견 제시 활동
8. 학교 전통의 정립, 지역사회와 학생 참여에 관한 활동
9. 각종 봉사 활동
10.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제47조 (회의 소집) 학생회는 분기당 1회 이상의 정기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회장 또는 지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8조 (의결 및 집행)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49조 (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4개의 부서를 둔다.

1. 기획지원부 : 부장1인, 차장1인, 부원을 두며 학생회 업무 총괄 및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 등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활동을 수행한다.
2. 문화행사부 : 부장1인, 차장1인, 부원을 두며 학생회 주관 모든 행사 개최를 위한 준비 및 진행 활동을 수행한다.
3. 안전복지부 : 부장1인, 차장1인, 부원을 두며 교내 시설물 및 학생 안전 관리 및 감독, 교내외 환경 개선 활동을 수행한다.
4. 건강체육부 : 부장1인, 차장1인, 부원을 두며 교내 체육대회 총괄 및 각종 체육 관련 행사 및 사안을 담당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제50조 (부·차장) ① 각 부의 부·차장의 자격은 (2학기)2학년 부원으로 한다. 단, 1학기의 경우 3학년 부원에 해당한다.

- ②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가 끝난 지 2주 안에, 전임 부장·차장과 협의하여 각부의 부·차장을 결정한다.
- ③ 전출, 징계 등의 사유로 부장이나 차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정·부회장이 나머지 임원과 협의하여 본교 (2학기)2학년 재학생 중에서 새로운 부장, 또는 차장을 선발한다. 단, 1학기의 경우 3학년 재학생에 해당한다.

제51조 (부원) ① 학생회 임원이 구성된 지 1개월 안에, (2학기)1학년 부원 선발 고사를 실시한다.

- ② 1학년 부원은 다음 학년도에 2학년 부원으로 승급하여 학생회 임원을 구성한다.
- ③ 전출, 징계 등의 사유로 부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회장이 임원과 협의하여 본교 1학년 재학생 중에서 새로운 부원을 선발한다.

제52조 (산하 기구) ① 운영위원회는 ‘장훈제 준비 기획단’을 산하 기구로 둘 수 있다.

1. ‘장훈제 준비 기획단’은 장훈제 준비 두 달 전 공개 모집 및 선발한다.
 2. ‘장훈제 준비 기획단’은 성공적 장훈제 개최를 위한 준비를 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교내 ‘홍보 대사단’을 산하 기구로 둘 수 있다.
1. ‘홍보 대사단’은 교내 홍보대사 동아리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2. ‘홍보 대사단’은 학생회 홈페이지, SNS 관리 및 각종 홍보물 작성, 대외 홍보 사업 등의 활동을 한다.

제 4 장 대의원회

제53조 (용어) 대의원회란 모든 학급 대표가 참여하는 ‘학생의회’로서 학생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54조 (구성 및 임기) 대의원회는 운영위원회, 학급의 정·부회장 등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대의원회의 임기는 당해 학기별로 한다.

제55조 (의장) ①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자치회 운영위원회장이 맡는다.

②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의 운영을 맡으며, 대의원을 대표한다.

제56조 (업무 및 권한) 다음 각호를 심의·의결한다.

1. 학생자치회 운영 계획 및 운영 개정안에 대한 심의
2. 학생 자치활동 관련 예산(안) 심의
3.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에 부친 안건 처리
4. 대의원회 및 학급회에서 건의한 사항 심의
5. 학생 자치활동 규정의 개정에 관한 심의·의결
6.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개선 심의
7.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 학생회(안) 발의 및 심의
8. 운영위원회 정·부회장, 각부 부장 및 차장 불신임 결의
9. 운영위원회 정·부회장 당선자(재투표 결과) 및 입후보자가 없을 때, 운영위원회 회장·부회장 선출
10.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 및 심의

제57조 (의결) ①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해당 회기 내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 ③ 지도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학교장에게 전달한다.
- ④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대의원회는 정·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이 학생회 운영상 중대한 잘못을 범했을 때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으며,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 (자격상실) ① 본회 대의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생활교육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 학생 조치(3~9호)가 확정되었을 때
3. 생활평점제 규정에 따라 벌점 20점 이상을 받았을 때
4. 기타 사유로 운영위원회 임원, 학급 정·부회장 등 대표의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

제5장 학급회

제1절 정·부회장 및 임원

제59조(자격) 학급회 임원의 자격은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한다.

제60조(임원의 구성) 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부장 및 차장 각 1인, 체육부장 및 차장 각 1인, 환경부장 및 차장 각 1인, 안전부장 및 차장 각 1인, 봉사부장 및 차장 각 1인, 학습부장 및 차장 각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61조(임원의 임기) 학급회 임원의 임기는 1학기로 한다.

제62조(임원의 선출) ① 학급 정·부회장 선거는 별도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② 기타 학급 임원의 선출 방법은 새로 선출된 학급 정·부회장이 학급 담임 교사에게 자문하고 학급회 회원들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63조 (임원의 임무) 학급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급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 시 학급회 의장이 된다.

2. 학급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을 대리한다.

3. 기타 학급 임원의 임무는 정·부회장이 담임교사의 조언을 받아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64조 (회의) 학급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를 둔다.

① 정기 회의는 학교 교육계획에 의하여 학급 자치활동 시간에 실시한다.

② 임시 회의는 학급 재적수 과반수의 학생이 요구하거나, 학급회장 및 학급 담임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급회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③ 학급 회의는 학생 자치활동이 관련된 사항, 건의 사항, 기타 학급의 특색 사안 등을 협의·의결한다.

④ 학급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담임 및 부담임 교사는 학급회의 자문위원이 된다.

제65조 (자격상실) ① 학급 정·부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생활교육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 학생 조치(3~9호)가 확정되었을 때

3. 생활평점제 규정에 따라 벌점 20점 이상을 받았을 때

4. 학급 정·부회장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했거나, 당선 사례를 했을 때

② 학급 정·부회장이 자격을 잃었을 경우, 징계받은 날로부터 임명을 취소하며, 2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시행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학급 정·부회장을 임명한다.

③ 학급 정·부회장이 전학을 간 경우에도 2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시행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학급 정·부회장을 임명한다.

④ 학급 정·부회장이 자격을 상실했다 해도 임기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자문 및 승인을 통해 보궐선거를 시행하지 않는다.

제2절 학급 정·부회장 선거 규정

제66조 (입후보 자격) 해당 학급의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통솔력이 있으며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제67조 (선출 방법) 학급 학생들의 추천으로 직선으로 선출한다.

① 회장 : 1차 투표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는 다득표자 2명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시행하여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② 부회장 : 회장 후보로 당선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대상으로 회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다.

③ 위의 조항은 담임교사와 학급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68조 (임명) 각 학급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정·부회장은 학급 담임교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69조 (보궐선거) ① 학급 정·부회장 임기 중 자격을 잃은 자의 후임은 2주 이내에 직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정·부회장의 임기 종료일까지 선거 일정이 확보되지 않거나 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에는 제41조 4~6항에 준한다.

제70조 (당선 사례 금지) 정·부회장 당선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례도 금지한다.

제 6 장 지도위원회

제71조 (목적) 지도위원회는 학생자치회의 활동 전반을 지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제72조 (구성) 학생자치회 활동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하여 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창의인재부 부장으로 하며, 지도위원은 각 부서 부장 교사 및 학생회 담당 교사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교사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73조 (기능 및 역할) 지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지도한다.

1. 학생자치회의 발전과 육성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자치회 운영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4.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생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7 장 재 정

제74조 (예산) ① 본회의 예산은 「학교 운영 지원 회계」에서 지원하며, 예산은 학생자치회 활동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예산의 수납 및 지출 등에 관한 사무 처리는 학교 회계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예산을 지출할 때는 학생회 담당 지도 교사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제75조 (회계연도) 학생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76조 (예산 편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예산안이 소정 기일 내에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③ 예산 확정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8조 (결산) 결산은 회계연도 만료 20일 이내에 결산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대의원

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지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진행한다.

제 8 장 규정 개정

제79조 (발의) 본회의 규정 개정을 위한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대의원회의에서 재적 대의원 1/4이상이 발의하였을 때
- ② 지도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때

제80조 (의결) 개정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1조 (심의) 의결을 거친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2조 (효력 발생) 개정된 회칙은 학생회장이 즉시 공고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고와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 자로 시행한다.